

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 설치·운영 계획(24.5.16.)

1.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

학교폭력 예방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과 시설관리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한다.(설치 근거: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3항)

2. 영상정보처리기기시설 설치·운영 담당부서, 책임관, 연락처

○ 담당부서 : 행정실

(매년 3월 CCTV현황 등록·개인정보종합포털)

○ 책임관 : 최은하 (연락처) 031-256-6568

○ 운영담당자 : 권민화 (연락처) 031-256-0085

○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(복수 가능):당직 기사님(야간)(연락처)031-256-6568

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		개인영상정보 보호운영담당자(접근 권한 자)	
책임자	교장 최은하	담당자	행정실장 권민화
전화	031-256-6568	전화	031-256-0085

3. 설치·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 대수, 위치, 성능 및 촬영범위

목적	설치대수	위치	촬영범위	촬영시간
시설물 관리	16대	본관 및 후관, 체육관, 정문 및 후문 등에 고정	본관, 유치원, 앙궁장, 정문, 후문, 운동장, 체육관 주변 등 학내 주변 방향	24시간
보관기간	안내판 부착장소	담당부서	운영책임자	연락처
30일	교문 앞	송정초등학교	송정초등학교장	031) 256-6568
모니터링.개인화상정보파일 보관 장소				본교 숙직실, 교장실(모니터링)

4. 제7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

○ 안내판 규격 : 40cm*30cm(1개), 28cm*20cm(12개)

○ 부착장소 : 정문 교문 벽(40cm*30cm)

5.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, 영상정보의 보유기간, 영상정보의 보관·관리·삭제 방법,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

연번	위치	대수	성능	촬영범위	촬영시간	보관기간	비고
1	동쪽 현관 옆	1	200만 화소 이상	출입구 및 건물 주변	24시간	보유기간30일	에스원
2	유치원 뒤편 현관 옆(현관)	1	200만 화소 이상	출입구 및 건물 주변	24시간	보유기간30일	에스원
3	유치원 뒤편 현관 옆(분리수거장)	1	200만 화소 이상	출입구 및 건물 주변	24시간	보유기간30일	에스원
4	숙직실 창고 입구	1	200만 화소 이상	출입구 및 건물 주변	24시간	보유기간30일	에스원
5	후문 현관 위	1	200만 화소 이상	출입구 및 건물 주변	24시간	보유기간30일	에스원
6	중앙 현관 옆 조형물	1	200만 화소 이상	출입구 및 건물 주변	24시간	보유기간30일	에스원
7	엘리베이터 왼쪽 벽면 (3층)	1	200만 화소 이상	출입구 및 건물 주변	24시간	보유기간30일	에스원
8	서쪽 벽면 (양궁장)	1	200만 화소 이상	출입구 및 건물 주변	24시간	보유기간30일	에스원
9	도서실 (도서실창구)	1	200만 화소 이상	도서실내	24시간	보유기간30일	에스원
10	도서실 (도서실창구)	1	200만 화소 이상	도서실내	24시간	보유기간30일	에스원
11	경비초소 위	1	200만 화소 이상	정문	24시간	보유기간30일	에스원
12	조회대 위	1	200만 화소 이상	운동장 주변	24시간	보유기간30일	에스원
13	체육관/충 연결통로	1	200만 화소 이상	연결통로 주변	24시간	보유기간30일	에스원
14	체육관 분리수거장 근처	1	200만 화소 이상	분리수거장 및 은편	24시간	보유기간30일	에스원
15	가스계량기 보호휀스 근처	1	200만 화소 이상	가스계량기 및 은편 건물 주변	24시간	보유기간30일	에스원
16	2층 연결통로 복도	1	200만 화소 이상	체육관 통로	24시간	보유기간30일	에스원
모니터링.개인화상정보파일 보관 장소				본교 숙직실, 교장실(모니터링)			

-보유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보유기간을 영상정보의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한다.([표준지침 제45조제2항](#)) 30일 이상이 지나면 보관했던 파일이 삭제 될 수 있도록 한다.

6.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·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 현황

모니터링.개인화상정보파일 열람 재생	장소	출입통제 현황
	본교 숙직실	통제 구역 출입자 명단에 있는 담당자와 동행하여 열람 재생 가능할

7. 영상정보처리기기 실시간 모니터링 관련 사항(시간대별 전달 인력 지정 및 운용, 통합관제센터 연계 포함)

-숙직실에서 야간에 당직 기사분이 모니터링함

8. 녹화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·재생하도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

○ 공공기관은 원칙적으로 수집 목적을 넘어서 개인영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, 다음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[모집 의 이용](#) 제공이 가능합니다. ([법 제18조제1항 제2항](#))

개인영상정보 [목적 의](#) 이용. 제3자 제공 제한의 예외

1.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를 얻은 경우
2.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

TOP

3.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 4.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
 5.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친 경우
 6. 조약,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
 7.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
 8.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 9. 형(刑) 및 감호,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 ※ 단, 5 ~ 9호는 공공기관의 목적 외 이용·제공 시에만 적용

○ 개인영상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기관은 명칭/취급자, 목적/사유, 근거, 기간(파기예정일자 포함), 제공형태를 모두 기재한 문서(전자문서 포함)로 신청하여야 합니다.(표준지침 제9조)

* 제공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파기예정일자를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30일 이내로 함

1. 요청기관의 명칭 및 요청 일자
2. 요청의 법적 근거
 -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18조제2항제2호 및 「민사집행법」 제74조 등
3. 이용 목적 및 이용 기간
4. 파기 일시 및 파기 방법
 - 다른 법령에 따라 보관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를 명시
5. 요청하는 개인영상정보의 내용 ※ 예) 영상촬영일시, ○○장면
6. 요청하는 개인영상정보의 형태 ※ 예) 전자파일, 영상출력물 등
7. 제공 요청 방법 ※ 예) 이메일, 저장매체(USB 등)를 통한 직접(또는 우편)제공, 영상출력물의 직접(또는 우편)제공 등
8. 해당 업무 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

○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하며, 파기 등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하여야 합니다.(법 제18조제5항, 시행령 제15조, 표준지침 제46조제1항)

1.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생성기간(녹화된 기간)
2. 이용하거나 제공받은 공공기관의 명칭 및 취급자(소속/ 직급/성명/연락처)
3.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
4.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 그 근거
5.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(제공의 경우 파기예정일자를 반드시 포함)
6.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
 - 7. 제공한 이후 파기 여부 등 그 결과와 처리일자
8.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한 경우 그 내용 및 결과

○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공하는 기관은 제공사실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합니다.(법 제18조제4항, 시행규칙 제2조)

* 제공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"제공한 날짜·법적 근거·목적·개인정보의 항목"을 관보 게재 또는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계속 게재함

○ 개인영상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은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안전한 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, 보유기간 만료, 목적 달성 등의 경우 제공받은 개인영상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고 그 결과와 처리일자를 제공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. 또한, 파기예정일자가 도래할 경우 파기기간 연장을 문서(전자문서 포함)로 다시 요청하여야 합니다.

* 다른 법령의 특별한 규정에 따라 사건기록 등 기록물에 포함하여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회신

* 견별 통보가 곤란할 경우 제공하는 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분기 이내의 단위 기간을 정해 일괄적으로 회신할 수 있음

○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한 기관은 제공이후 파기 등 결과 회신 여부를 분기 이내 단위 기간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, 제공받은 기관이 파기 등 결과와 처리일자를 회신하여 오면 이를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.

* 미회신이 있는 경우 회신을 독려하고 필요한 관련 조치를 취하여야 함

개인영상정보 제공 시 준수사항 및 절차

□ 준수사항

- 문서(전자문서 포함)로 명확한 목적 명시와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 요청 및 제공
- 제공받은 자는 제공받은 목적 범위 내에서 이용과 안전한 관리
- 제공한 기관은 제공 사실에 대해 인터넷 등 공개 및 기록, 관리
- 목적 달성 등 불필요하게 된 경우, 즉시 파기 및 파기사실 통보

□ 요청·제공 절차

- (신·청) 정보주체 또는 수사관서에서 신청서 또는 공문으로 요청
- (접수·확인) 본인 여부, 신청서 내용 확인 및 해당 영상 유무 파악
- (내용 검토) 제3자 영상 포함 및 타인의 생활 침해 등 검토
- (열람·제공) 영상화면의 현장 열람 또는 영상파일/ 출력물 등 제공, 필요시 제3자의 영상 모자이크 또는 마스킹 처리후 제공
- (안전 관리) 제공받은 자는 제공받은 목적 범위 내 이용 및 안전한 관리
- (파기) 제공받은 자는 제공목적 달성한 후 즉시 파기 및 통보

9. 권익 침해 구제 방법

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,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 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등을 신청 할 수 있다.

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.

1. 개인분쟁조정위원회

-홈페이지 : www.kopico.go.kr

-전화번호 : 1833-6972

2.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: 1566-0112

10.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

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계획은 2024년 5월 16일에 수정되어 실시됩니다.

변경 사유	개정 날짜	개정 사항
CCTV 관리업체 변경 및 CCTV 추가설치	2024년 5월 16일	<p>변경 전 -넥슨정보통신에서 CCTV 관리 (2대) -CCTV 개수: 12대</p> <p>변경 후 -에스원에서 CCTV 관리(16대) -CCTV 추가 설치: 4대 (총 CCTV 개수: 16대)</p>